

2005. 9. 15.(목)

제116회 임시회의 제3차본회의

## 심사보고서

-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

자치행정위원회

#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9. 2. 제 천 시 장
- 나. 회부일자 : 2005. 9. 5.
- 다. 상정일자 : 2005. 9. 12.(제11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제4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윤종철)

### 가. 제안사유

- 송학보건지소 및 옥천보건진료소 신축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부지, 시설물 취득

### 나. 주요내용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온저장 등 저온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보건소 및 진료소는 '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국비 396,387천원, 도비 99,097천원, 시비 99,096천원등 594,580 천원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05년 1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충북 보건위 생과-9341('05. 4. 28)호와 '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내역등에 의거 국비 396,387천원 지방비 198,194천원의 지원내역이 통보된 사업으로 송학보건지소는 시곡리 1146-1번지 외 1필지 992m'에 건평 240여평으로 신축되고

- 옥천 보건진료소는 옥천리 138-1번지외 1필지 800m'에 건평 35평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의료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주산지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 된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선별, 저장, 포장 시설과 상품화 시설등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비용을 절감코자 수산면 내리에 집하, 선별, 포장등 250여평에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00, 시비 100)의 예산을 '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산면 내리 8번지의 4,549m'의 부지에 595m'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시설물의 설치를 남제천 농협소유 부지 523평에 확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며 시설물 설치가 지난하다고 하였는데 당초 부지선정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지역농가의 간접지원 사업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으로 본 시설의 수혜자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시설을 시유 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직접 수혜자가 농가등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남제천농협과 협의하는 과정과 협의 폐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원만한 해결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확실한 계획으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산지유통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 산지유통센터라는 좋은 시설이 들어 가는데 부지해결 자체를 농협에서 해결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 보조율을 제천만 50%를 따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등은 유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만들어 줍니다. (유경상 위원)
- 운영관계는 남제천하고 협상을 해서 위탁관리 할 겁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이동수 위원)
- 위탁관리시 그 사람들이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동수 위원)
- 당초사업이 발상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김진학 위원)
- 사업이 완료 됐을 경우 꼭 남제천농협에서 위탁관리 하라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 나. 답변요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 현재는 산지유통센터가 없습니다.
- 사업비중 50%를 자부담하는 생산자단체형은 현재 남제천농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형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도시에 하는 것은 소비지 유통센터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산지유통센터입니다.
- 위탁관리할 것입니다.
- 안받는 대응은 지금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고요.....
- 지역의 농산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시설설치입니다.
-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1부. 끝.